

자체평가규정

제정 2010.07.01 개정 2015.02.27
개정 2017.08.14 개정 2019.06.13

제1장 총칙

제1조(평가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국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한다)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원칙)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본 대학교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제5조(항목별 평가)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평가시기)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장 평가기구

제7조(전담부서)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며, 전담부서는 기획처로 한다.

② 기획처장은 평가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업무 총괄
2. 자체평가 역량향상
3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
4.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

③ 전담부서는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자로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평가영역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기본방향 수립
2. 자체평가 지도 심의 및 조정

3. 대학자체평가 심사서 작성
 4. 평가위원회 운영
 5.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, 공시 및 개선 대책에 관한 총장의 자문
 6. <삭제 2018.03.01>
 7. 교육품질 향상(중장기 발전계획, 특성화계획, 대학 기본운영 계획 등)을 위한 추진 성과 평가<신설 2017.08.14., 개정 2019.06.13>
 8. 기타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
-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 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총장은 필요할 경우 7명 이내의 내·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체평가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,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실무위원회)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 지급) 자체평가에 참여하는 내외부 위원 등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13조(평가계획 수립) 기획처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(평가자료 제출)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과는 기획처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평가실시) ① 기획처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6조(실사)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과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7조(평가결과 보고) 자체평가위원장은 작성한 평가 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과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